

<제 711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I. 회원사 동정

### 광주은행

#### ◆ 고병일 부행장, 14대 광주은행장 후보 확정



광주은행은 지난달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고병일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확정했다. 앞서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장 후보로 송종욱 현 행장과 고병일 부행장을 후보로 결정했으나, 송종욱 은행장이 용퇴함에 따라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제14대 행장으로 취임하게 될 고병일 부행장은

현 송종욱 은행장에 이어 자행 출신 행장 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병일 은행장 후보는 1991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2019년 영업1본부 부행장 등을 두루 거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며 성격이 소탈해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 기아AutoLand광주

#### ◆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성금전달



기아AutoLand광주가 주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 및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에 참여했다.

이날 제막식에 기아AutoLand광주는 지역사회 대표기업으로써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온도탑 첫 기부기업으로 동참했으며, 박치용 기아AutoLand광주 경영지원실장이 기부금 1억7천65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 관계자는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참여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다”며 “기아AutoLand광주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I. 회원사 동정

### 보해양조

#### ◆ 보해 로컬브랜드 상품 '여수밤바다 소주' 인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 2019년 로코노미(로컬+이코노미) 상품으로 첫 출시한 '여수밤바다 소주'가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서 시장점유율 80%대를 차지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보해가 '여수밤바다 소주'를 지난 7월 말 리뉴얼 출시한 이후 한 달 만에 평소 판매량의 2배를 넘겼고,

3개월 만에 지난해 1년 판매량의 50%를 뛰어넘어 이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로컬이 힙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난데 따른 지역 이미지를 담고 있는 라벨과 기존 소주병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디자인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수밤바다 소주는 여수를 상징하는 돌산대교와 별빛을 이미지화시킨 라벨로 유명하고, 지난 7월에는 기안84의 작품 4점을 여수밤바다 전면 라벨에 입히며 리뉴얼 출시했다.

### 해양에너지

#### ◆ 전남인재육성장학금 기탁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이윤영)는 지난달 28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남 인재육성장학금 2천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오광호 해양에너지 경영마케팅본부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양에너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기탁해 매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나주, 담양, 화순 등 8개 시군 저소득 대학생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 알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으나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I. 회원사 동정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 광주영어방송재단과 MOU 체결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사장 박성수)과 (재)광주영어방송재단(GFN, 사장 김휘)은 지난달 3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최상준홀에서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박성수 이사장과 GFW 광주영어방송 김휘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거주 내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공동기획, 제작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연계를 통한 협력 △각 기관의 활동과 관련 산업에 대한 홍보 △ 각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 및 자원의 상호교류 및 활용 △기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된 사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박성수 이사장은 "광주영어방송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관광객들에게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양동전통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발돋음하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대중컨벤션센터

#### ◆ 'ESG 경영'비전 선포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김상묵)가 지난 1일 임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이번 ESG 경영선포식은 친환경 경영 추진과 안전사고 제로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선언하기 위해 마련 됐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최근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ESG 경영 비전 및 세부 전략과제를 수립해 경영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경영을 핵심가치로 두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김상묵 사장은 "일상 속 ESG경영 실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취지로 선포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고

## 이스라엘 농업의 R&amp;D



윤석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김성환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복한 후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두 나라가 똑같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를 해왔고, 아울러 과감한 R&D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도 필자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집트·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국경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흙의 흐단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약 65%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서 세계적인 농업 국기로 탈바꿈한 기적의 나라이다. 연 강수량이 200mm 이하의 반건조 기후 지역이지만 관계 기술과 온실 재배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수출 국가로 전환했으며, 농업 관련 기술과 장비를 전 세계에 수출 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농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R&D가 뒷받침된 선진기술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도 매우 빈약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의 혁신, 관개, 물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등을 개발해 왔다. 시무의 나라 이스라엘이 선진농업국가가 되기까지 농업은 95%의 기술과 5%의 노동에서 나온다는 청의 농업에 중점을 둔 결과이다. 지난 25년간 농업 생산성이 16배 증가한 것은 혁신적인 마인드와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원동력이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독립 후에 엄청난 전쟁을 경험했음

호수를 끓어 식물 뿌리에 필요한 만큼의 물만 공급하는 점적관수(Drip Irrigation·방울 물주기)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지름이 5~20mm 되는 호스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작물에만 물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통해 물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물을 적에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작물을 키우고 있다. 호스 길이가 500m에서 6000m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이 점적 관개는 효율성이 90~95%로 이스라엘의 그런 혁명을 주도한 기술임에 틀림이 없다. 물 부족이 예상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농업의 또 하나의 강점은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에 있다. 이스라엘은 좁은 농지, 부족한 천연자원, 건조한 날씨와 부족한 수자원, 주변국과의 전쟁 등등 엄청나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농업 부문을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했는데 여기에는 과감한 R&D 투자가 있었다.

그 결과 중자 개량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다양한 기후 조건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고, 병충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가진 종자 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유럽 토마토 재배의 40%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종(種) 일만큼 그 실적이 대단하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농업벤처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풀벌 대신 흙벌을 이용한 특특한 물수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등 품질을 키우는 농업에서 IT 기술을 접목시킨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R&D는 미래다.

광주테크노파크

전남일보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피니언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과 자동차도시 미래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1월 28일 빛그린 산단에서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기업대표 자동차산업협회 테크노파크 그린카진흥원과 각대학 연구소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회으로 선임된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첫 소감에서 GGM을 글로벌 그레이트로 표현하고 싶다며 광주를 세계적인 위대한 자동차 도시로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을 목표로 먼저 올 12월 빛그린 산단 옆 약 100만평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사실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조성,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차량용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 윤 정부는 광주 공약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여기에는 민선 8기 광주시장 역시 미래

모빌리티 단지 조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해 이번에 본격적으로 미래차 국가산단지정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시작을 알렸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실사단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예정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광주시장은 현장에 직접 나가 ‘완성형 자동차 공장이 2개가 있는 광주에서 전기차 자율차 등 대한민국 미래차 선도도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이 것이 안 되면 광주가 죽는다’고 실사단에게 절절히 호소했다.

실사단도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미래 차 부문에서 전기차 자율차 등 실현 가능 한 부문을 타겟으로 추진하길 권고했다. 또 투자할 기업이 있는지, 산단조성에 반발 등 장애요인은 없는지를 물었다.

유치산업 수요확보 가능성과 사업추진의 용이성은 국가산단 지정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실사단의 평가사항이다. 이 문제에 대해 관주의 단을 보여준다.

내부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기아차의 미래차 국가산단으로의 이전, 광주 밖에 있는 핵심 미래차 핵심 부품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신규 국가산단 입주 수요조사 결과 158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냈으며 계획대비 산업용지 수요 면적만도 약 1.5배로 많았다.

거기에 광주는 인공지능, 지능형 가전, 광융합, 스마트 금형, 고효율 에너지

등 미래차와 연계 협력이 높은 산업기반  
이 구축되어 있어 전국 어디보다 빠르게  
미래차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간 빛그린 산단 조성도 아무런 반발 없이 토지수용과 개발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 옆 예정 산단 부지개발도 토지수용과 개발 장애요인은 없다. 거기다 광주의 민관이 함께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뜨겁게 요청하고 있다.

100만여평 정도로는 부족한 형편이지만 우선적으로라도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우리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시와 더불어 산업부의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을 유치하려고 한다.

여러 분야 중 소재 경량화, 전장부품,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육성해서 앞으로 기아차와 GGM 완성차를 중심으로 국내외 핵심 앵커기업 유치, 100여개사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차로 먹고사는 광주를 만들고자 한다. 열마든지 가능하다.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과 미래 모빌리티 광주는 혁신 정부의 약속이자 국가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또 광주시의 공약이자 불확실한 경제를 뚫고 나갈 광주시민의 미래비전이다.

인디언 속담에 ‘땅은 선조가 준 것이다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다’는 말이 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의 오늘과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희망의 땅이다. 그 희망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과 행동을 모아야 할 때다.

## II. 광주경총 소식

### 〈제1581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조영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 국가발전 전략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지난 12월2일 광주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시진핑 시대의 중국 국가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제1581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중국 지도자는 제1세대 마오쩌뚱 시대(1949~76)로 혁명과 건설 주도였으며 제2세대鄧샤오텅 시대(1978~92)는 항일전쟁의 시기로 개혁 개방을 주도했다. 제3세대는 장쩌민 시대(1993~2002), 제4세대는 후진타오 시대(2002~12), 5세대는 시진핑 시기(2012~현재)로 구분된다. 현재는 제5세대로 시진핑은 1953년 북경 출생으로 고위간부 자제이며 섬서성에서 노동을 했고 청화대 법대 박사, 국방부장 비서, 복건성 당서기, 절강 서기 상해 서기,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다.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국정 목표는 "중국의 꿈"인데 단기목표는 전면적 소강사회이며 장기 목표로는 중화민족의 중흥으로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이다. 정치는 "공산당 영도"인데 목표는 공산당 일당제 강화(민주화 반대)이며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강화와 반부패 척결 정책을 재천명하고 있다. 경제는 "혁신 경제"로 경제기조는 혁신·균형·녹색·개방·공동·향유를 발전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과 창업을 기조로 하고 있다. 사회분야는 "소강 사회", "공동 부유"전략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도농 격차를 해소하여 공동부유 달성을 장기적 과제로 삼고 있다.

14조 달러의 경제를 갖춘 중국의 경제와 기술 자립도는 제4차 산업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으며 미·중간의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대만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한·중간의 기술과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는 우리의 대응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 II. 광주경총 소식

### <2022 광주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축하 영상>



본회 김봉길 회장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인공지능융합사업단,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외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 광주 투자환경설명회’에서 축하 영상을 통해 광주광역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기업인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 사무국 일지(11.28 ~ 12.2)

11.28 (월)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2.1 (목)	● 하반기 외국인 권리보호협의회
11.29 (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 청년 직무역량강화 교육		
11.30 (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광주은행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12.2 (금)	● 제1581회 금요조찬포럼
			● 역대회장단 초청 간담회

### III. 노사 및 법제동향

#### 경제6단체 부회장단,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

- 경총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 “입법 논의 중단되어야”
-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노사 대등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
- 우리 국민도 80%가 반대,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 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12월 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특히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 사용자 ·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 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 III. 노사 및 법제동향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또한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12월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12월 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제계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III. 노사 및 법제동향

[첨부1]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난 11월 30일 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단 합의 없이 심지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경제계는,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사명감으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법으로 우리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기업할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I. 노사 및 법제동향

사용자·근로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근로자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설립과 교섭요구도 가능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되는 등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됩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 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투자유치, 조직 통폐합 등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무관하거나 회사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도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입니다.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다릅니다. 대부분 폭력·파괴,

### III. 노사 및 법제동향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파업권 남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노사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해손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나 현황조사, 국제비교, 현장 적용성 연구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국가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경제6단체 일동

### III. 노사 및 법제동향

[첨부 2]

#### < 불법쟁의행위 관련 해외 입법례 >

국가	불법쟁의행위 책임 규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연방노동관계법 제303조)</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제공의무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민법 제415조)</li> <li>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709조)</li> </ul> </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행한 경우, 노동조합은 물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정당한 쟁의행위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파업 개시 당시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li> <li>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서 ‘이행의 소’와 ‘기처분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935조, 제940조).</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법전 제1246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인용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대표, 조합원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짐.</li> <li>1982년 모든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삭제함.                      ※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함.</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행동이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대상이 됨 (경제관계불법행위 등).</li> <li>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최근 상향 조정).</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노동조합 조합원 수</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상한액 (단위 : 파운드)</th></tr> </thead> <tbody> <tr> <td>5,000명 미만</td><td>40,000</td></tr> <tr> <td>5,000명 ~ 24,999명</td><td>200,000</td></tr> <tr> <td>25,000명 ~ 99,999명</td><td>500,000</td></tr> <tr> <td>100,000명 이상</td><td>1,000,00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등 근로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40조 내지 제241조)</li> <li>사용자는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 ‘임시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원모독죄로 벌금 및 노동조합의 재산이 기압류 될 수 있음.</li> </ul>	노동조합 조합원 수	상한액 (단위 : 파운드)	5,000명 미만	40,000	5,000명 ~ 24,999명	200,000	25,000명 ~ 99,999명	500,000	100,000명 이상	1,000,000
노동조합 조합원 수	상한액 (단위 : 파운드)										
5,000명 미만	40,000										
5,000명 ~ 24,999명	200,000										
25,000명 ~ 99,999명	500,000										
100,000명 이상	1,000,000										
IL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권한 행사 중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음.</li> </ul>										